

5. 질의 및 답변요지(답변자 도시계획국장 구돈회)	
질 문 요 지	답 변 요 지
<p>○창천동 지역은 89년에 풍치지구를 일부해제한 것으로 아는데 왜 청원 지역은 제외되었는가?</p> <p>○현 풍치지역을 해제할시 시청의 의견은?</p> <p>○창천동은 대부분 상가지역화되어 풍치지구 보존이 어렵다고 보는데 상가지역이라도 풍치지구로 유지할 것인가?</p>	<p>○'89년도 해제지역은 대지 규모가 적고 저지대 저소득 주민거주지에 한해서 해제하였음.</p> <p>○창천동 지역은 대지규모가 비교적 크고 또 지역에 대학촌이 있으며 성산로 등대로에서 가시권지역으로 해제는 곤란하다고 사료됨.</p> <p>○풍치지구가 상가지화 되는 것은 지구 보전상 문제점이 있음.</p>
<p>6. 토론요지 없음.</p> <p>7. 소위원회 심사내용 청원요구지역을 현장확인 해보니 풍치지역은 지역중간에 묻혀 대로변 가시권이나 대학촌 인구지역과 무관하며 지역일부는 상가지역화되어 풍치지구보존은 불가능 상태이므로 주민요구대로 풍치지구를 해제할 것을 건의함.</p> <p>8. 심사결과 소위원회 심사안대로 현지가 풍치지구로서 보존이 불가능하다면 지역현황에 맞게 풍치지구를 해제하기로 결정.</p> <p>9. 소수의견 없음.</p> <p>10. 기타 필요한 사항 예산조치 필요없음.</p> <p>11. 의견서 청원인이 요구한 창천동 100번지 일원 풍치지구는 89년도 인접지는 해제하고 남은 잔여지로서 지역 현황으로 보아 풍치지구 보전이 불가능하고 더구나 상가기능까지 침투된 상태이므로 용도지구의 합리적인 지정을 위해 이 청원요구지역은 풍치지구에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.</p>	<p>.....</p> <p>흑석1동 170번지 일원 풍치지구 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심사보고서</p> <p>1993. 2. 도시정비위원회</p> <p>1. 심사경과 ○청 원 자 : 동작구 흑석동 186-10 임인도 ○소개의원 : 김우중의원 ○접수일자 : 1992.11. 5(접수번호 : 61번) ○회부일자 : 1992.11.9 ○상정일자 : 제6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(1993.2.24)상정, 의결</p> <p>2. 청원요지 ○동작구 흑석1동 170번지 일원 363필지 119,484㎡(약 36,207평)인 이 지역은 풍치지구로 지정할 당시인 52년 전에도 지정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, ○'87년도 전체 풍치지구 면적의 1/2을 해제하였을 당시 풍치지구 지정 목적상 우선하여 해제할 곳은 그대로 두고 풍치지구를 보존해야 할 곳은 해제하였기 인근 주거지와 형평을 결하였고</p>

<p>○현재에 이르러서는 5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주변 환경의 변화로 풍치지구로서 보존가치가 전혀 없음에도</p> <p>○건축허가조건의 제한등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흑석동 일원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실여건에 맞도록 풍치지구를 조속 해제할 것을 요구</p> <p>3. 취지설명 요지(김우중의원)</p> <p>○풍치지구는 도시계획법상 도시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“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”에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52년전인 1941.3.25(왜정시대)에 지정되었으며 지정당시에도 지형이나 입지조건으로 보아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에는 적당치 않은 지역이었으며</p> <p>○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지역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풍치지구 지정목적에 맞지 않으며 또한 이 지역보다 지대가 높고 수목등이 있어 자연 풍치를 보존할 만한 곳은 오히려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풍치지구 지정이 형평에 맞지 않는 실정이며</p>	<p>○풍치지구 거주하는 주민은 건축법등 관련법규에 제약을 받아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 현저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</p> <p>○이곳 풍치지구는 법령상 지정 목적에도 맞지 않으므로 지역 현황에 맞게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청원의 소개에 이른 것임.</p> <p>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송재경)</p> <p>○이 지역은 현충 묘지 공원과 노량진 근린공원 그리고 한강 제1근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중심으로 한 기존 주택지로 인접지에는 간선도로인 현충로가 있고 부근에는 중앙대학교를 비롯한 7개 학교가 배치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있음.</p> <p>○그런데 이지역 풍치지구 관리 경위를 보면 1987년 인근지역 약 1/2을 해제하면서 청원요구지역은 지역이 저지대이고 대지들도 적은 평수들인데 이곳이 당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등을 재확인하여 청원인의 요구사항이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심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.</p>
<p>5. 질의 및 답변요지(답변인 : 도시계획국장 구돈희)</p>	
<p>질의 내용</p>	<p>답변 내용</p>
<p>○흑석동지역 풍치지구를 지정된 목적은 무엇인가?</p> <p>○1989년도에 일부지역은 풍치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왜 이 지역은 방치하였는가?</p> <p>○현지 주민의 풍치지구 해제를 바라는 주민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?</p> <p>○주민 요구대로 풍치지구를 완화할 용의는 없는가?</p>	<p>○한강을 수계로 강에 날아온 철새가 쉬어갈 수 있도록 하고 흑석동지역 자연 풍치를 보존하기 위한 것임.</p> <p>○1989년도 해제하였던 곳은 흑석동중에서도 저지대로서 비교적 대지규모가 적고 저소득 집단거주지역을 우선하여 해제한 것임.</p> <p>○대부분의 주민이 다 풍치지구해제를 바라고 있음.</p> <p>○도시계획 운영상 주민의 요구대로 용도지구를 해제할 시 어려운 점이 있어 여의치 못한 실정임.</p>

<p>6. 토론요지 없음.</p> <p>7. 소위원회 심사내용 현지를 답사한 바, 흑석동 풍치지역은 50년 전에 지정되어 지역이 대부분 일반 주거지로 바뀌어 풍치지역 보존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저소득시민이 많아 주민들도 해제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어 현 지역 실정에 맞도록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함.</p> <p>8. 심사결과 소위원회에서 기초 심사한 내용대로 흑석동지역 풍치지구는 지역현황에 맞도록 이를 해제하기로 결정함.</p> <p>9.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.</p> <p>10. 기타 필요한 사항 예산조치 필요 없음.</p> <p>11. 의견서 ○흑석동지역은 등 전제가 일반주택지화되어 풍치지구로서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해제하여 저소득시민이 지역형편에 맞게 재건축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. ○흑석동 인접 지역은 1989년에 전부 해제한 바 있었음.</p>	<p>號線 중곡정거장 出入口가 2개로 設計 工事中이나 住民의 便宜를 위하여 出入口 2개를 더 增設해 줄 것을 要求하는 것으로써 交通委員會에서는 民願의 隘路事項을 최대한 解決해야겠다는 일념으로 小委員會를 構成하여 現場을 訪問, 住民代表者, 地下鐵建設本部 關係者 및 施工會社의 意見을 듣고 深度있는 檢討를 한 結果 현재 設計되어 있는 出入口 2個에서 增設이 可能한 韓電敷地 方向으로 出入口를 하나 더 增設하여 住民들의 조그마한 不便이라도 解消시키도록 努力하였습니다. 따라서 여러 議員님께서도 交通委員會에서 採擇한 本 請願件에 관한 意見書를 滿場一致로 議決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意見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/p> <p>地下鐵7號線 7-14工區內 出入口 增設要求에 관한 請願을 檢討한 結果 本 중곡정거장은 既存驛舍가 10輛 基準 205m보다 40m가 짧은 8輛 基準 165m로 設計되어 있으며 대개 驛舍는 3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驛舍는 驛舍가 2層으로 設計되어 있어 他 驛舍에 비해 換氣室, 變電室, 通信室, 機械室, 驛務室 등을 設置하고 나면 나머지 利用客이 使用할 수 있는 空間은 約 60m정도로 반대편 出入口까지 이동에 크게 不便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으나 현재 建設中인 韓電敷地 方向으로 나 있는 出入口에 붙여 住民이 살고 있는 쪽으로 出入口 하나를 增設할 경우 다소나마 住民의 不便을 덜 수 있다고 判斷되므로 서울市地下鐵建設本部는 既存 2個 出入口를 韓電敷地쪽에 1個 出入口를 追加하여 建設함으로 民願을 解決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. 이상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/p> <p>○副議長 趙貞順 그러면 地下鐵7號線 7-14工區內 出入口 增設要求에 관한 請願에 대해서 交通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內容과 같이 市議會 意見으로 採擇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, 異議 없으십니까?</p>
<p>18. 地下鐵7號線7-14工區內出入口增設要求에 관한請願(朴光勳議員 紹介) (17時 20分) ○副議長 趙貞順 다음은 議事日程 第18項 地下鐵7號線 7-14工區內 出入口 增設要求에 관한 請願을 上程합니다. (議事棒 3打) 交通委員會 金箕英議員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金箕英議員 交通委員會所屬 金箕英議員입니다. 本 地下鐵7號線 7-14工區內 出入口 增設要求에 관한 請願에 대하여 존경하는 同僚 議員 여러분께 審査報告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本 請願의 趣旨는 현재 建設中인 地下鐵7</p>	<p>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